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2년 4월)

2022. 4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월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
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이용
2	사진	등록
3	영화	제작
4	그림	유튜브
5	폰트	침해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KOTRA '코트라 볼드체' 글꼴로 작성

〈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〉

○ (영상) 온라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영상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가?

-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[1] 영상이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.

○ (사진) 사진관에 의뢰하여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는데, 사진관 측은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다며 가족의 허락 없이 홍보에 이용하였다.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?

-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[2] 저작권을 가지게 되므로, 사진관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. 다만, 초상 본인은 초상권을 가지므로 위탁에 의한 초상 사진에 대해서는 사진 저작자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는 없다.[3]

○ (영화) 영화에서 특정 저작물의 제목이 언급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?

- 제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,[4] 단순히 제목만 언급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○ (그림)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림을 콜라주(Collage)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가?

-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. 원저작물을 콜라주로 만드는 것은 일부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

1) 저작권법 제46조.
2) 저작권법 제2조 제2호.
3) 저작권법 제35조의 제4항.
4) 대법원 1977.7.12. 선고 77다90판결.

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.

○ **(폰트) 가구를 제작한 후, 각인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겼다. 이후 법무법인에서 폰트의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문제가 되는가?**

-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될 수 있으나,[5] 폰트 도안, 즉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.[6] 따라서 외주 업체에 의해 일정한 서체로 각인된 가구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〈 기타 주요 상담 〉

○ **(이용) 도서관이 무료로 도서관 로비에서 OTT서비스를 이용해 영화를 틀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?**

- 도서관에서 영화를 재생하는 경우, 영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DVD 등으로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그 DVD 등을 구입하여 재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.[7]
- 다만, OTT 서비스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 등은 발행[8]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.

○ **(등록) 편집저작물로 등록하면 개별 소재도 등록이 되는 것인가?**

-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.[9] 따라서, 편집저작물로 등록하면 편집, 즉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대해 등록되는 것일 뿐 이용된 개별 소재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.

---

5) 대법원 2001. 6. 29 선고 99다23246 판결.
6) 서울고등법원 1994. 4. 6 선고 93구25075 판결.
7)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,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.
8)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.
9)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.

○ **(제작) 독특한 영화 촬영 기법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**

-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므로,[10] 촬영 방법, 기법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. 따라서 기법을 이용하여 창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**(유튜브) 유튜버가 섭외하여 출연한 사람이 즉석에서 창작한 시를 낭독했는데, 시의 저작권은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와 출연자 중 누가 가지는가?**

-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지므로 유튜버가 아닌 시를 창작한 출연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다.

○ **(침해)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려고 한다. 저작물의 제목이 길어 짧게 줄이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?**

-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,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,[11] 무단으로 제호를 수정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.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KOTRA '코트라 고딕체' 글꼴로 작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2년 4월)저작물은 " 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0) 저작권법 제2조 제2호.
11)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.